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육아필수품 제외〉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769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육아필수품 제외	2
※ 참고자료: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및 1회용 기저귀 출고 현황	7

I. 제안경위

2025년 12월 30일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2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폐기물부담금 제도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양육에 필수적인 제품에까지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 양육 가정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일회용 기저귀 등은 대체재가 부족한 필수재로서 가격 탄력성이 낮아 소비를 억제하는 데 명확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품목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실질적인 폐기물 감축 효과 없이 제품 가격 상승만을 유발하여, 결과적으로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금전적 제재보다는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이나 수거 체계 개선 등 건설적이고 근본적인 방식으로 환경 문제에 접근하는 정책적 전환이 요구됩니다.

이에 육아 필수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2조제2항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육아필수품 제외

개정안은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항제3호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생략)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② ----- ----- ----- -----. ----- -----.
1·2. (생략)	1·2. (생략)
<신설>	3. 임신·출산·양육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
3. (생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현행법 제12조제1항1)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이 들어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의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주문자의 상표를 붙이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재료·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를 말한다)나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살충제·유독물 제품, 부동산액, 1회용 기저귀 등 6개 품목의 제조·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함)을 부과하고 있는데,

【 폐기물부담금 개요 및 부과 대상 】

□ 개 요

- 유해물질 함유,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등의 제조·수입업자에게 폐기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1993년~)

□ 적용 대상

- (산정기준) 환경에 유해하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가 있으며, 재활용의 기술성과 경제성이 없는 품목
- (품목) ① 살충제·유독물 용기, ② 부동산액, ③ 1회용 기저귀, ④ 담배, ⑤ 플라스틱제품(36개 업종), ⑥ 고흡습성수지 아이스팩
- ※ △ “껌” 품목은 사용량 감소 및 배출문화 정착으로 부과대상에서 제외(24.7월)
- (납부자) 해당품목 제조 및 수입업자

자료 : 기후에너지환경부

현행법 제12조제2항2)에 따라 ① 제16조3)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

처리에 드는 비용을 매년 부과·징수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2.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3.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제2호의2·제2호의3에 따른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및 감면대상 품목)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란 다음 각 호의 제품·재료·용기를 말한다.

1. 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살충제(「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 및 금속 캔·유리병·플라스틱용기를 사용하는 유독물제품
2. 부동산액(「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군수품 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및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에 사용되는 부동산액만 해당한다)
3. 삭제 <2024. 6. 4.>
4. 1회용 기저귀(의료기관에 납품하는 1회용 기저귀는 제외한다)
5. 담배(「지방세법」 제53조, 제54조 및 제6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하거나 환급하는 담배는 제외한다)
6.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으로서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도·소매업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제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제품은 제외한다.
 - 가. 플라스틱을 원료로 사용한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최종단계 제품의 경우 해당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
 - 나. 합성수지 섬유제품
 - 다. 법 제1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이 제품 가격에 포함된 1회용 컵
7. 고흡습성수지(高吸收性樹脂, Super Absorbent Polymer)가 냉매(冷媒)로 들어있는 아이스팩

분해성수지제품, ②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③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수입업자가 제조·수입한 제품 등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그런데, 1회용 기저귀 등은 출산·양육 과정의 필수재⁴⁾로서 가격 탄력성이 낮아 폐기물부담금 부과를 통한 소비 억제 효과가 미미하고, 오히려 폐기물 감축 효과 없이 제품 가격 상승만을 유발하여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음(제안이유 참조).

이에 개정안은 육아 필수품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출산·양육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

2025년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⁵⁾은 0.8명으로 역대 최저치였던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하여야 한다.

1. 제16조에 따른 제품·포장재와 생분해성수지제품

2.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재료·용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회수·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와 환경부장관과 회수·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협약의 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제품·재료·용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재료·용기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유통단계에서 재질·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4) 한국소비자원, “유아용 일회용 기저귀 품질 비교시험 결과”, 2021. 12. 15. p.1

- 육아를 하는 소비자들은 편리하고 흡수력이 좋은 일회용 기저귀*를 천 기저귀 보다 선호함. 설문조사(647명) 결과 일회용 기저귀 사용 비율은 96.8%로 압도적이며, 일회용 기저귀와 천 기저귀의 혼용이 2.2%, 천 기저귀가 1.0%임.

5) 합계출산율: 여자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2023년 대비 0.08명 반등하였지만, OECD 회원국 평균(2023년 기준 1.43명)에 비해 여전히 현저하게 낮은 수준임.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현황(2015년 ~ 2025년) 】

(단위: 천 명, %, 가임 여자 1명당 명)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p
출생아 수	438.4	406.2	357.8	326.8	302.7	272.3	260.6	249.2	230.0	238.3	254.5
합계출산율	1.24	1.17	1.05	0.98	0.92	0.84	0.81	0.78	0.72	0.75	0.80

자료: 통계청,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2026. 2., 재구성

저출생의 원인은 경제적 요인(양육비용 부담 등), 사회적 요인(일-가정 양립의 곤란 등), 문화·가치관적인 요인(가치관·인식의 변화 등), 인구학적 요인(혼인율 하락 등)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영유아 자녀 가구의 양육비용 부담이 핵심 원인으로 지목⁶⁾되고 있음.

한편, 1회용 기저귀에 대한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개당 5.5원)과 2024년 영유아용 1회용 기저귀 출고·수입량(15억 5,811만 3,176개) 및 2022년 ~ 2024년 출생아 수(71만 7,500명)를 고려하면, 개정안 입법 시 양육가구는 아이 1명당 연간 약 12,000원⁷⁾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됨.

6) 육아정책연구소 육아정책 Brief 제101호, “영유아자녀 가구와 무자녀 가구의 생활비 지출, 어떻게 다를까?”, 2025. 4. 30.

- 2023년 기준 영유아자녀 가구의 전체 생활비 지출액은 월평균 377만5천원으로, 무자녀 가구의 355만원에 비해 27만5천원 가량 높음. 하지만, 양육비용을 제외한 영유아자녀 가구의 생활비 지출 금액⁴⁾은 226만9천원으로, 무자녀 가구에 비해 현저히 낮음.

7) 1,558,113,176개÷717,500(명)*5.5(원)=11,943(원)

이 금액이 양육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경제 대책이 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나, 육아 필수품을 환경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재정의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저출생 문제 해소에 상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① 1회용 기저귀는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폐기물부담금 제도 취지에 부합되는 품목인 점, ② 폐기물부담금 제외 시 소비자가 체감하는 가격부담 완화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제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역효과가 클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저출생 대책은 가계에 바우처⁸⁾ 지급 확대 등 직접적인 지원방식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48

8) 만 24개월 미만 영아 가정, 저소득층·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기준중위소득가정 등에 지원

※ 참고자료: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및 1회용 기저귀 출고 현황

□ 폐기물부담금 산출기준

구 분	세부 품목		요율
살충제·유독물제품	플라스틱용기	500ml 이하	개당 24.9원
		500ml 초과	개당 30.7원
	유리병	500ml 이하	개당 56.2원
		500ml 초과	개당 84.3원
	금속캔	500ml 이하	개당 53.9원
		500ml 초과	개당 78.2원
부동액			ℓ당 189.8원
1회용 기저귀			개당 5.5원
담배			20개비 당 24.4원
플라스틱제품	건축용		합성수지 투입 kg당 75원
	일반용		합성수지 투입 kg당 150원
아이스팩	고흡수성수지 냉매		전체 중량 kg당 313원

□ 1회용 기저귀 출고 현황 (2020~2024년)

(단위 : 개)

구 분	1회용 기저귀 용도별 출고·수입량						
	계	유아용		성인용		반려동물용	
2020년	2,775,628,772	1,981,991,910	71.4%	428,267,701	15.4%	365,369,161	13.2%
2021년	2,626,158,234	1,770,205,599	67.4%	408,315,057	15.5%	447,637,578	17.0%
2022년	2,647,501,378	1,681,137,699	63.5%	406,208,110	15.3%	560,155,569	21.2%
2023년	2,875,625,630	1,744,135,942	60.7%	530,208,665	18.4%	601,281,023	20.9%
2024년	2,706,117,594	1,558,113,176	57.6%	537,860,853	19.9%	610,022,585	22.5%